

담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담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 1. 27.

담양군의회 의장



1. 조례명 : 담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2. 제안 이유

- 담양군의회 조례에 대하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법적 간결성·합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규정의 표기와 체계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군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열린 의회를 구현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담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담양군의회 업무추진비 등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 개정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다. 「담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
례」 개정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라. 「담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개정에 관한 사
항(안 제4조)

마. 「담양군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 조례」 개정에 관한 사
항(안 제5조)

바. 「담양군의회 입법·정책 법률고문 운영 조례」 개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사. 「담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개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아. 「담양군의회 토론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자. 「담양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차. 「담양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개정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4. 입법 예고 기간 : 2026. 1. 27. ~ 2. 1.(5일간)

5.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담양군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
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
소

다. 보내실 곳 : 담양군의회 의회사무과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 전화 : 061-380-3507~8(FAX 061-380-3590)

라. 의견제출 방법 : 전화, FAX, 직접방문, 우편

6. 조 례 안 : 붙임 참조

□ 의견 제출 서식

의견서

1. 규칙안 담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관련조문

의견

2. 의견

3. 기 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 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담양군의회 의장 귀하

담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담양군의회 위원회 조례」의 개정) 담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위원회”를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에 따라 담양군의회 위원회”로 한다.

제2조 중 “의회”를 “담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의”를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5명이내”를 “5명 이내”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4명이내”를 각각 “4명 이내”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원심사”를 “청원 심사”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중 “의원”을 “의회 의원”으로 한다.

제6조제1항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 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의원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잔임기간”을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장선거”를 “의장 선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폐회중”을 “폐회 중”으로, “임기중 의장·부의장또는”을 “임기 중 의장·부의장 또는”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다음연도”를 “다음 연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징계

자격”을 “징계·자격”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때에는”을 “때는”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제2항 중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을 “이상이면 그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수있다”를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폐회중”을 “폐회 중”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때에는”을 “때는”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안전심사”를 “안전 심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때에는”을 “때는”으로, “경과에”를 “경과의”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수행함에 있어”를 “수행하면서”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준용규정)”을 “(준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회의운영, 의사등”을 “회의 운영, 의사 등”으로, “회의규칙”을 “「담양군의회 회의 규칙」”으로 한다.

제2조(「담양군의회 업무추진비 등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의 개정)

담양군의회 업무추진비 등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집행기준”을 “집행 기준”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를 “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업무추진비 등”이란”을 ““업무추진비등”이란”

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전단 중 “**의회의장**”을 “**의회 의장**”으로, “**상임위원장(이하 “의장 등”이라 한다)**”을 “**상임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목 후단 중 “**활동기간 중**”을 “**활동 기간에는**”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적용범위**)”를 “(**적용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업무추진비 등**”을 “**업무추진비등**”으로, “**관하여**”를 “**관해서**”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업무추진비 등의 사용·집행**”을 “**업무추진비등의 사용 및 집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업무추진비 등**”을 “**업무추진비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다음날**”을 “**다음 날**”로, “**자택근처**”를 “**자택 근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의회의원**”을 “**의회 의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상호간**”을 “**상호 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서 업무추진비로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경우

제5조 중 “**업무추진비 등의 사용서류**”를 “**업무추진비등의 사용 서류**”로, “**지출건별로 작성해야**”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사용내역 공개**)”를 “(**사용 내역 공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업무추진비 등**”을 “**업무추진비등**”으로, “**인원 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을 말한다)**”을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으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해야**”를 “**사용 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로 한다.

제7조 중 “업무추진비 등”을 “업무추진비등”으로, “경우에는”을 “때는”으로, “공개해야”를 “공개하여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업무추진비 등의 부당사용”을 “업무추진비등의 부당 사용”으로, “실시해야”를 “실시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업무추진비 등의 사용내역”을 “업무추진비등의 사용 내역”으로, “확인된 경우에는”을 “확인되면”으로, “취해야”를 “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업무추진비 등”을 “업무추진비등”으로, “집행실태”를 “집행 실태”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위법·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를 “(위법·부당 사용자에 대한 제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업무추진비 등의 위법·부당사용자에 대하여”를 “업무추진비등의 위법·부당 사용자에 대해서”로, “취해야”를 “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정지”를 “사용 정지”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3조(「담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의 개정) 담양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담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담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담양군의회 또는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을 “담양군의회 또는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부군수”를 “담양군 부군수”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을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으로, “실과소장과 동일직급”을 “실·과·소장과 동일 직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담양군수의 보조기관 중 국장, 실·과·소장급 공무원

3.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의 장

5.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제4조(「담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의 개정) 담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담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를 “담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원” 이”를 ““의원”이”로, “신뢰를 받”을 “신

되반”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공사행위”를 “공사 행위”로 한다.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아니된다”를 각각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심의대상”을 “심의 대상”으로, “가지는”을 “가진”으로,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이행해야”를 “이행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신고를 하여야”를 “신고하여야”로,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징계의결”을 “징계 의결”로, “해야”를 “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위반사항”을 “위반 사항”으로, “경우에는”을 “때는”으로, ““법” 이”를 ““법”이”로, “별표 1”을 “규정과 별표의 징계기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규칙”을 “「담양군의회 회의 규칙」”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검직신고”)를 “(검직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신고해야”를 “신고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검직사항”을 “검직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신고사항”을 “신고 사항”으로, “신고해야”를 “신고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검직신고”를 “검직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권고해야”를 “권고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존중해야”를 “존중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데도 불구하고”를 “데도”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검직현황”을 “검직 현황”으로, “검직신고”를 “검직 신고”로, “점검해야”를 “점검하여야”로 한다.

제5조제7항 전단 중 “검직신고”를 “검직 신고”로, “게시해야”를 “게시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직현황”을 “검직 현

항”으로, “**검직신고 안내**”를 “**검직 신고 안내**”로, “**실시해야 하며, 검직신고한**”을 “**해야 하며, 검직 신고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이력사항**”을 “**이력 사항**”으로, “**게시자료**”를 “**게시 자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수의계약체결**”을 “**수의계약 체결**”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검증해야**”를 “**검증하여야**”로 한다.

제5조의2제2항 중 “**사임해야**”를 “**사임하여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를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의**”를 “**사람의**”로,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해야**”를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신고사항**”을 “**신고 사항**”으로, “**때에는**”을 “**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검직신고 사항과 수의계약체결**”을 “**검직 신고 사항과 수의계약 체결**”로, “**신고현황을 점검해야**”를 “**신고 현황을 점검하여야**”로 한다.

제8조제1호 중 “**검직신고**”를 “**검직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수의계약체결**”을 “**수의계약 체결**”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청렴의무**”를 “**청렴 의무**”로 한다.

제5조(「담양군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 조례」의 개정) 담양군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군정발전**”을 “**군정 발전**”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를 “**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을 ““**연구단체**”란”으로, “**자치입법**”을 “**자치법규 입법**”으로, “**지역현안**”을 “**지역 현안**”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목적달성**”을 “**목적 달성**”으로, “**현장조사**”를 “**현장 조사**”로, “**일정비용**”을 “**일정 비용**”으로 한다.

제3조제4호 중 “**현장참여**”를 “**현장**”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예산지원**)”을 “(**예산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현장활동**”을 “**현장 활동**”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개최시 필요경비**”를 “**개 최시 필요 경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필요경비**”를 “**필요 경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연구주제 외의 연구수행이나 기타 다른**”을 “**연구 주제 외의 연구 수행이나 기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때에는**”을 “**때는**”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이상의 의원**”을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등록신청서**”를 “**연구단체 등록 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지체없**”을 “**지체 없**”으로,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단체 등록 변경 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존속기한**”을 “**존속 기한**”으로 한다.

제8조 본문 중 “**11월 30일까지**”를 “**11월 30일 이내**”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연구용역)”을 “(용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사 실시”를 “행사 시행”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연구용역)계획 변경 신청서”를 “(용역) 계획 변경 신청서”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의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대한 중간보고를 할”을 “대해 중간보고할”로, “결과보고서”를 “결과 보고서”로, “사용내역서)”를 “사용 내역서)”로 한다.

제11조 중 “연구결”을 “연구 결”로, “통하여”를 “통해”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6조(「담양군의회 입법·정책 법률고문 운영 조례」의 개정) 담양군의회 입법·정책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담양군의회 입법·정책 법률고문 운영 조례”를 “담양군의회 입법·재정·법률 고문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담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입법·정책법률고문(이하 “법률고문”이라 한다)을 두고 입법·정책 법률사안 등의 자문운영”을 “담양군의회 입법·재정·법률 고문을 두고 입법·재정·법률 사안 등의 자문 운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률고문”을 “입법·재정·법률 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관한 입법사안의”를 “관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상위법, 관련법규 해석 및 입법·정

책”을 “상위법 및 관련법규 해석, 입법·재정·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수임 받은 의회관련 쟁송사건”을 “수임받은 의회 관련 소송 사건”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법률고문”을 각각 “고문”으로 하며, 같은 항 중 “쟁송사건”을 “소송 사건”으로, “자문을 하여서”를 “자문하여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률고문”을 “고문”으로 한다.

4. 의회 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 그 밖의 의회 운영 사항의 자문

제3조 중 “법률고문의 정원은 2명”을 “고문의 정원은 3명”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률고문”을 “고문”으로, “입법·정책 법률분야”를 “입법·재정·법률 분야”로, “지방의회관련 전문연구기관”을 “지방의회 관련 전문 연구 기관”으로, “추천을 받”을 “추천받”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률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 서식)”를 “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승낙서”로, “위촉장(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률고문”을 “고문”으로, “해제 할”을 “해제 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2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의회운영상”을 “의회 운영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손상시키”를 “손상하”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법률고문”을 “고문”으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법률고문”을 “고문”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와”를 “때는 의회운영위원회와”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입법·정책법률 문제와 쟁송사건”을 “입법·재정·법률 문제와 소송 사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을 지급 할”을 “범위에서 회의 수당을 지급할”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법률고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담양군 고문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같은 금액의”를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공휴일인 경우에는”을 “공휴일이면”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자문기록부 비치)”를 “(자문 기록부 비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대하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자문기록부”를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입법·재정·법률 자문 기록부”로 한다.

제7조(「담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개정) 담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외출장”을 “국외 출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상시출장을 요하는”을 “상시 출장을 필요한”으로, “대하여”를 “대해서”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를 “상시 출장 여비(이하 “월액 여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의 경우에 출장 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는 월액 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 일수가 월 15일 미만일 때는 월액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제2조제2항 후단 중 “출장일수”를 “출장 일수”로, “통산하지 않는다”를 “포함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 한도액 등 그 밖의”를 “월액 여비의 지급 대상, 월 지급 한도액 등과 기타”로, “관하여”를 “관해서”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여비의 지급구분)”을 “(여비 지급구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국내출장을 할 경우국내여비는 계급별료”를 “국내 출장을 할 경우 국내 여비는”으로 한다.

제4조 중 “국내여행”을 “국내 여행”으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를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를 “환수하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출장신청”을 “출장 신청”으로, “지급받는”을 “받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출장여부”를 “출장 여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준용) 공무원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담양 군의회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담양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별표 1”은 “「담양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않는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 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담양군의회 토론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담양군의회

토론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리·운영”을 “관리 및 운영”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토론회 등””을 ““토론회등””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군민의견”을 “현안 사항에 대한 군민 의견”으로, “토론회,”를 “토론회, 간담회,”로,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 「담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56조”를 “의견 청취 행위를 말하며 「담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56조”로 한다.

1. “현안 사항“ 이란 담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담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사항 등을 말한다.

제3조의 제목 “(운영원칙)”을 “(운영 원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토론회 등”을 “토론회등”으로, “군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해야”를 “군민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토론회 등”을 “토론회등”으로, “군민의견”을 “군민 의견”으로, “노력해야”를 “노력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간”을 “토론회등의 참가자가 상호 간”으로, “해결방안”을 “해결 방안”으로, “토론회 등을 운영해야”를 “토론회등을 운영하여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토론회 등을”을 “토론회등을”로, “토론회 등 개최승인신청서”를 “토론회등 개최 승인 신청서”로, “제출해야”를 “제출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개최승인신청서”를 “토론회등 개최 승인 신청서”로, “5일”을 “3일”로, “통보해야 하며, 불승인하는 경우에는”을 “통보

하여야 하며, 불승인할 때는”으로, “첨부해야”를 “첨부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토론회 등”을 “토론회등”으로, “때에는”을 “때는”으로, “참가방법”을 “참가 방법”으로, “공고해야”를 “공고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토론회 등”을 “토론회등”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토론회 등에 대한 연간계획”을 “토론회등에 대한 연간 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작성·관리해야”를 “작성 및 관리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토론 사항 및 진행 사항

제6조제1항 중 “토론회 등에서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해야 하며, 토론회 등”을 “토론회등에서 사회자는 토론회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토론회 등”을 “토론회등”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토론회 등”을 “토론회등”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을 “인정할 때는”으로, “반영해야”를 “반영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토론회 등”을 “토론회등”으로, “제5조 제3항”을 “제5조제3항”으로, “보고해야”를 “보고하여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을 “(관계 기관 등의 협조 요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토론회 등”을 “토론회등”으로, “때에는 관계기관”을 “때는 관계 기관”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실비보상)”을 “(실비 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제목 외의 부분 중 “토론회 등”을 “토론회등”으로, “자료제출자”를 “자료 제출자”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9조(「담양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담양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회기중”을 “회기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회의수당”이란”을 ““회의 수당”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의원이었다는 자의 사망당시”를 “의원의 사망 당시”로 한다.

제3조의 제목 “(보상금 지급대상)”을 “(보상금 지급 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급대상”을 “지급 대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에 준한다”를 “인정 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를 준용한다”로 한다.

제4조의 제목 “(보상금 지급기준)”을 “(보상금 지급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지급금액”을 각각 “지급 금액”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1급”을 “제1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치료를 요하는”을 “치료가 필요한”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보상금의 청구등)”을 “(보상금의 청구)”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보상금의 지급결정)”을 “(보상금의 지급 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심의결과”를 “심의 결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보상금의 지급방법)”을 “(보상금의 지급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일시불”을 “일시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때에는”을 “때는”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의원상해 등 보상 심의회 구성)”을 “(의원 상해 등 보상 심의회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1. 담양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제10조제1호 중 “의한 보상금 지급대상”을 “따른 보상금 지급 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경위조사”를 “경위 조사”로 한다.

제11조 단서 중 “소속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만료된 때에”를 “만료되었을 때”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때에는”을 “때는”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소속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15조 본문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소속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10조(「담양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의 개정) 담양군 주민
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해야**”를 “**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축·운영
해야**”를 “**구축·운영하여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1이상이 연대 서명해야**”를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의회의 의장**”을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의장**”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주요내용을 설명해야**”를 “**주요 내용을 설명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날인해야**”를 “**날인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3
항 중 “**제출해야**”를 “**제출하여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포함해야**”를 “**포함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열람기간**”을 “**열람 기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해
야**”를 “**하여야**”로 한다.

제10조 중 “**열람기간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를 “**열람 기간 내에 의장에
게 제출하여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통지해야**”를 “**통지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날부터10일**”을 “**날부터 10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열람기간**”을 “**열람 기간**”으로, “**통지해야**”를 “**통지하
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줘야**”를 “**주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미달하는 경우에는”을 “미달하면,”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제1조(「담양군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에 따라 담양군의회 위원회----- ----- -----.
제2조(위원회의 설치) 의회에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담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
제3조(상임위원회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다 . 1. 의회운영위원회 5명 이내 2. 자치행정위원회 4명 이내 3. 산업건설위원회 4명 이내	제3조(상임위원회 설치) ----- ----- 위원 ----- -----. 1. ----- 5명 이내 2. ----- 4명 이내 3. ----- 4명 이내
제4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1. ~ 3. (생략)	제4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 ----- 청원 심사 ----- -----. 1. ~ 3. (현행과 같음)
제5조(상임위원회 위원) ① 의원	제5조(상임위원회 위원) ① 의회

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고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는 겸직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6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위원의 임기 개시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상임위원장) ① 각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의장선거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생략)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으며, 임기중 의장·부의장또는 다른 상임위원장에 선임된 때에는 선

의원-----
-----.

--.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
-----.
다만,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 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의원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
--- 남은 임기-----.

제7조(상임위원장) ① -----

----- 1명-----

② ----- 의장 선거-----
-----.

③ (현행과 같음)

④ -----
-----.
폐회 중-----
----- 임기 중 의장·부의장 또는 -----

임된 날에 종전의 상임위원장직
에서 사임한 것으로 본다.

제8조(특별위원회) ① (생략)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
위원회를 두되,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다음연도 6월 30일까
지로 한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
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
다.

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제외
하고, 그 밖에 특별위원회를 설
치할 때에는 그 활동 기간을 정
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
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생략)

제9조(특별위원회 위원장) ① (생
략)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위
원이,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
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

제8조(특별위원회) ① (현행과 같
음)

② -----

----- 다음 연도 -
-----.

③ ----- 징
계·자격-----
-----.

④ -----
----- 때
는 -----
-. 다만, 본회의 의결로 그 기
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현행과 같음)

제9조(특별위원회 위원장) ① (현
행과 같음)

② -----

----- 이상이면 그중 --
-----.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

② (생략)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전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 경과에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4조(전문위원) ① · ② (생략)

③ 전문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료의 요구를 위원회의 의결로 할 수 있다.

제1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운

③ -----
----- 수
있다. ---- 폐회 중-----
-----.

제12조(간사) ① ----- 1
명-----.

② (현행과 같음)

③ ----- 때는 ----
-----.

제13조(소위원회) ① -----
--- 안전 심사-----
-----.

② ----- 때
는 -----
경과의 -----
-.

제14조(전문위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수행하면
서 -----
-----.

제15조(준용) -----
----- 회의 운영,

영, 의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회의규칙</u> 을 준용한다.	의사 등----- 「 <u>담양군의회 회의 규칙</u> 」----- -----.
---	--

제2조(「담양군의회 업무추진비 등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의회 업무추진비 등 사용에 관한 <u>집행기준</u> 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집행</u> <u>기준</u> ----- -----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u>다음 각 호와 같다</u> .	제2조(정의) ----- ----- <u>다음과</u> -----.
1. “ <u>업무추진비 등</u> ”이란 담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다음 각 목의 경비를 말한다. 가. <u>의회의장</u> (이하 “의장”이라 한다)·부의장 및 <u>상임위원장</u> (이하 “의장 등”이라 한다)의 의정활동 및 직	1. “ <u>업무추진비등</u> ”이란 ----- ----- ----- ----- 가. <u>의회 의장</u> ----- ----- <u>상임</u> <u>위원장</u> ----- -----

무수행을 위한 의회운영업
무추진비를 말하며, 이 경
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중 그 위원장을
포함한다.

나. (생략)

2. (생략)

제3조(적용범위) 업무추진비 등
의 사용 및 공개에 관하여는 법
령 등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사용 등) ① 의장 등 및 회
계관계공무원은 공적 의정활동
또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업무추진비 등의 사용·집
행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와 관련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면 업무추진비 등을 사용·집
행해서는 아니 된다.

1. (생략)

2. 심야시간(23시 이후 다음날 7
시 이전을 말한다), 휴일, 사용
자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
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

활동 기간에는 -----
-----.

나.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 범위) 업무추진비등-
----- 관해서-----

--.

제4조(사용 등) ① -----

----- 업무추
진비등의 사용 및 집행-----
---.

② -----
----- 업
무추진비등-----
-----.

1. (현행과 같음)

2. ----- 다음 날 -

-- 자택 근처 -----

-----.

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생략)

4.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
다)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
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의원 상호간 식사

6. (생략)

7. 그 밖의 의회규칙으로 정하
는 경우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
추진비 등의 사용서류는 관계
규정에 따라 작성하되, 각 지출
건별로 작성해야 한다.

제6조(사용내역 공개)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등의 사용일시, 목
적, 대상 인원 수, 금액, 결제
방법(신용카드, 현금 등을 말한
다)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해야 한다.

② (생략)

제7조(공개의 범위) 의장은 업무
추진비 등에 관한 정보공개 청

-----.

3. (현행과 같음)

4. 의회 의원-----

5. -----
-- 상호 간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서 업
무추진비로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경우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
추진비등의 사용 서류-----
----- 지출 건
별로 작성하여야 --.

제6조(사용 내역 공개) ① ----
업무추진비등-----
---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 --

-- 사용 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

② (현행과 같음)

제7조(공개의 범위) ----- 업무추
진비등-----

구가 있을 경우에는 「공공기관
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정한 것
외에는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장
은 업무추진비 등의 부당사용
방지를 위하여 의원 및 회계관
계공무원을 대상으로 해마다 한
차례 이상 그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등의 사
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
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
다.

③ 의장은 업무추진비 등의 올
바른 사용·집행을 위하여 해마
다 한 차례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예산
의 범위에서 그 집행실태를 점
검할 수 있다.

제9조(위법·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등
의 위법·부당사용자에 대하여

-- 때는 -----

공개하여야 ---.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
업무추진비등의 부당 사용 ----

----- 실시하여야 -
-.

② ----- 업무추진비등의 사용
내역-----

-- 확인되면 -----
----- 하여야 -----.

③ ----- 업무추진비등-----

집행 실태-----.

제9조(위법·부당 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 업무추진비등의
위법·부당 사용자에 대해서--

는 의회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란 환수, <u>사용정지</u>, 징계요구 등을 말한다. <u>제10조(의회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u>	----- ----- 하여야 -----. ② ----- -- <u>사용 정지</u>----- --. <u><삭 제></u>
---	--

제3조(「담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u>담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u> <u>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u>담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u> <u>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담양군의회 또는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2조(범위) <u>의회 또는 위원회에</u> <u>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u> <u>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u> 1. <u>부군수</u> 2. <u>군수의 보조기관중 국장, 실</u> <u>·과·소장급</u> 3. <u>법 제126조 내지 제129조의</u> <u>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u> 4. <u>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u> <u>중 군 본청의 실과소장과 동</u> <u>일직급 이상인 자</u> 5. <u>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하</u> <u>부 행정기관의 장</u> ,	제2조(범위) <u>담양군의회 또는 그</u> <u>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u> <u>-----.</u> 1. <u>담양군 부군수</u> 2. <u>담양군수의 보조기관 중 국</u> <u>장, 실·과·소장급 공무원</u> 3.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u>규정에 따른</u> <u>소속 행정기관의 장</u> 4. <u>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u> <u>원 중 ----- 실·과·소장과</u> <u>동일 직급 -----</u> 5.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른 <u>하부행정기관의 장</u>
---	---

제4조(「담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u>담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u> <u>윤리실천규범조례</u> 제2조(윤리강령) 담양군의회 의 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	<u>담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u> <u>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u> 제2조(윤리강령) ----- -- “의원”이----- ----- ----- 신뢰

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
도록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4. (생략)

5.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
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
게 책임을 진다.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
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
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
과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
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
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
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
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따
라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
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받-----
-----.

1. ~ 4. (현행과 같음)

5. -----
-- 공사 행위-----
-----.

제3조(윤리실천규범) -----

--.

1. -----

----- 아니 된다.

2. -----

----- 아니 된다.

3. -----

----- 아니 된다.

4. -----

아니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7.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8. 직무상 국외 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 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회의에 부쳐 징계의결 또는 윤리심사를

아니 된다.

5. -----

아니 된다.

6. 심의 대상 -----

----- 가진 -----

----- 아니 된다.

7. ----- 에 따른 -----

----- 이행하여야 --.

8. -----
----- 신고
하여야 -----

----- 아니 된다.

제4조(윤리심사 등) ① -----

----- 징계 의결
----- 하여야 -----

해야 한다. 다만, 담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반사항에 관하여 사법부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등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8조부터 제101조까지 별표 1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겸직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 -----
--- 위반 사항-----
----- 때는 ---

----- “법” 이-----
----- 규정과
별표의 징계기준-----
----- .

② -----
----- 「담양군의
회 회의 규칙」-----
- .

제5조(겸직 신고) ① -----

----- 신고
고하여야 -- .

② -----
겸직 사항-----

----- .

③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해야 한다. <중전 제2항에서 이동 2023.2.24.> ,

④ 의장은 검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직 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중전 제3항에서 이동 2023.2.24.>

⑤ 의장은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해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법 제43조제6항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1. 제5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2. (생략)

⑥ 의장은 검직현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연 1회 검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내역을 점검해야 한다. ,

⑦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원의

③ ----- 신고 사항-----
----- 신
고하여야 --. -----

④ ----- 검직 신고 -----

----- . -----

⑤ -----

----- 권고하여야 --.

----- 존중하여야

1. -----
데도 -----

2. (현행과 같음)

⑥ ----- 검직 현황-----
----- 검직 신고-----
----- 점검하여야 ---.

⑦ ----- 검

검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담양군의회 홈페이지
에 게시해야 한다. ,

⑧ 의장은 검직현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매년 6월 검직신고
안내 및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검직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은 절차를 거쳐 확인한다.

1. (생략)
2. 당선자 등록 시 이력사항, 의
회 수첩 및 홈페이지 게시자
료와 대조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내역과
대조

⑨ 의장은 신고 내역을 확인한
후 미신고·허위 및 부정확한
내역은 해당 의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소명이 미
흡한 사항에 대하여 검직 기관
· 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
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검증
해 한다.

제5조의2(검직 금지) ① (생략)

② 의원은 제1항에 해당되는 경

직 신고-----
----- 게시
하여야 --. -----

⑧ ----- 검직 현황-----
----- 검직 신고 안내
----- 해야 하며, 검직 신고
한 -----
-----.

1. (현행과 같음)
2. ----- 이력 사항---
----- 게시 자
료-----
3. 수의계약 체결 -----
--

⑨ -----

----- 검증
하여야 --.

제5조의2(검직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

우에는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검한 직을 사임해야 한다.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① 의원은 「담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
위원회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② (생략)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담양
군수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
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때
에는 성실하게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을 신고해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
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를 해
야 한다.

③ 의장은 연 1회 제5조의 겸직
신고 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비교하는 등 수의계약체
결 제한사항 신고현황을 점검해

사임하여야 --.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① -----
----- 제4
조에 따른 -----

-----.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

----- 사람의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

② ----- 신고 사항-
----- 때는 -----
-----.

③ ----- 겸직 신고
사항과 수의계약 체결 -----

- 신고 현황을 점검하여야 --.

야 한다. 제8조(징계)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에 부치거나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u>검직신고</u>를 허위로 한 경우 2. ~ 4. (생략) 5. 제7조에 따른 <u>수의계약체결</u> 제한사항 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 6. (생략) 7. 품위 유지, <u>청렴의무</u>, 회피 의무,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그 밖의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제8조(징계) ----- ----- ----- -----, ----- -----. 1. ----- <u>검직 신고</u> ----- 2. ~ 4. (현행과 같음) 5. ----- <u>수의계약 체결</u> ----- --- 6. (현행과 같음) 7. ----- <u>청렴 의무</u>----- ----- -----
--	--

제5조(「담양군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담양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의정 및 <u>군정발전</u> 에 이바지하기	제1조(목적) -----

	----- <u>군정 발</u>
	<u>전</u> -----

위하여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담양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특정 분야에 관한 자치입법, 의정 및 담양군 행정 전반, 지역현안 등에 대한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담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2. (생략)

3. “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개최하는 간담회, 세미나, 토론회, 현장조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일정비용을 말한다.

4. (생략)

제3조(연구활동 범위) 연구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

제2조(정의) -----
----- 다음과 -----.

1. “연구단체”란 -----

----- 자치법규
입법----- 지
역 현안 -----

-----.

2. (현행과 같음)

3. -----
목적 달성-----
----- 현장
조사 -----

-- 일정 비용-----.

4. (현행과 같음)

제3조(연구활동 범위) -----

-----.

1. ~ 3. (생 략)
4. 그 밖에 담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장참여 활동
제4조(예산지원) ① (생 략)

②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책연구·개발을 위한 현장 활동 여비
2. 정책연구·개발을 위한 세미나, 토론회, 간담회 등의 개최 시 필요경비

③ 의장은 정책연구·개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주제와 관련된 전문가, 주민 등을 포함하여 제3조의 연구활동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연구활동비는 해당 연구주제 외의 연구수행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⑤ 의장은 연구단체가 제4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연구활동

1. ~ 3. (현행과 같음)
4. -----

----- 현장 -----
제4조(예산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현장 활동 --
2. -----
----- 개 최 시 필요 경비

③ -----

- 필요 경비-----.

④ ----- 연구 주제 외의 연구 수행이나 기타 -----
-----.

⑤ -----
----- 때는 -----

비의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한
다.

제5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
능)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하며,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략)

제6조(연구단체의 구성 및 등록)

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3명 이상
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생략)

③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
자 하는 경우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의원이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 연구단체의 대표의원은 해당
연구단체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변동 사항
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연구

-----.

제5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
능) -----
----- “심
의위원회” -----
-----.

1. ~ 5. (현행과 같음)

제6조(연구단체의 구성 및 등록)

① ----- 이상---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연구단체
등록 신청서-----
-----.

④ (현행과 같음)

⑤ -----

지체 없----- 별지 제2
호서식의 연구단체 등록 변경
신청서---.

⑥ ----- 존속 기한-----

활동 종료 또는 의원의 임기 만
료일까지로 한다.

제8조(연구활동 기간) 연간 연구
단체의 활동 기간은 해당연도
연구활동 개시일부터 11월 30일
까지로 한다. 단, 의원의 임기
가 종료되는 연도의 경우 전·
후반기로 나누어서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연구활동비 신청) ① 연구
용역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
단체의 대표의원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연구활동(연구용역) 계
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세미나, 토론회, 간담회, 현
장조사 등에 소요되는 연구활동
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단체
는 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사실시
7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③ 연구단체가 연구용역 주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활동(연구용
역)계획 변경신청서를 작성하
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연구활동 기간) -----
-- 11월 30일 이내-----
----- . 다만-----
-----.

제9조(연구활동비 신청) ① -----

---(용역) -----
-----.

② -----

----- 행사 시행 -----
-----.

③ -----

-----(용역) 계획 변경
신청서-----
-----.

제10조(<u>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제출</u>) 연구단체는 해당 연구활동 기간 중 필요시 의장에게 연구활동 진행에 <u>대한 중간보고</u>를 할 수 있으며, 연구용역 완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u>연구활동 결과보고서</u>(연구용역 결과 및 연구활동비 <u>사용내역서</u>)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u>연구활동 결과 관리</u>) 의장은 연구단체의 <u>연구결과 보고서</u>를 담양군의회 홈페이지 등을 <u>통하여</u> 공개하여야 하며, 연구용역 결과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시 담양군수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2조(<u>의회규칙</u>)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u>의회규칙</u>으로 정한다.	제10조(<u>연구활동 결과 보고서의 제출</u>) ----- ----- --- <u>대한 중간보고</u> ----- ----- ----- <u>결과 보고서</u>----- <u>사용내역서</u>)----- -----. 제11조(<u>연구활동 결과 관리</u>) ---- ----- <u>연구결과</u>----- ----- <u>통해</u> ----- ----- -----. <<u>삭 제</u>>
---	--

제6조(「담양군의회 입법·정책 법률고문 운영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u>담양군의회 입법·정책 법률고문</u>	<u>담양군의회 입법·재정·법률</u>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의 회(이하 “의회”라 한다) 입법·정책법률고문(이하 “법률고문”이라 한다)을 두고 입법·정책 법률사안 등의 자문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① 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처리한다.

1. 자치법규의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관련법규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담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임 받은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4. 의회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그 밖의 의회운영 사항의 자문
5. (생략)

고문 운영 조례

제1조(목적) ----- 담양군의 회 입법·재정·법률 고문을 두고 입법·재정·법률 사안 등의 자문 운영-----

-----.

제2조(직무) ① 입법·재정·법률 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

1. -----
-- 관한 -----
2. ----- 상위법 및 관련법규 해석, 입법·재정·법률-----
--
3. -----
----- 수임받은 의회 관련 소송 사건-----
--
4. 의회 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 그 밖의 의회 운영 사항의 자문
5. (현행과 같음)

② 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법률고문은 담양군 고문변호사를 겸할 수 없다.

제3조(정원) 법률고문의 정원은 2명 이내로 한다.

제4조(위촉) ① 법률고문은 변호사, 관련학과 대학교수, 입법·정책 법률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또는 지방의회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의회운영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법률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한다.

제5조(해촉) 의장은 법률고문이 임기 중 일지라도 다음 각 호의

② 고문-----

-----.

③ 고문-----
소송 사건-----
----- 자문하여서-----
-----.

④ 고문-----
-----.

제3조(정원) 고문의 정원은 3명 -
-----.

제4조(위촉) ① 고문-----
----- 입법·재정·법률 분야-----
----- 지방의회 관련 전문 연구 기관-----
----- 추천받-----
-.

② -----
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승낙서-----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

제5조(해촉) ----- 고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생략)

2. 제2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위반한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생략)

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
는 행위를 한 경우

6. 법률고문 및 자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한
경우

7. (생략)

제6조(임기) 법률고문의 임기는 2
년으로 한다. 단, 의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운영
위원회와 협의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7조(회의) ① 의장은 입법·정
책법률 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
다.

②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을

----- 해제
할 -----.

1. (현행과 같음)

2.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

3. ----- 의회 운영상

4. (현행과 같음)

5. ----- 손상하--

6. 고문 -----

--

7. (현행과 같음)

제6조(임기) 고문-----
----- . 다만-----
----- 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
-----.

제7조(회의) ① ----- 입법·재정
·법률 문제와 소송 사건-----

-----.

② -----
- 범위에서 회의 수당을 지급할

지급 할 수 있다. 제8조(수당) ① <u>법률고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담양군 고문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같은 금액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u>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단, 그 지급일이 <u>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날에 지급한다.</u> 제9조(<u>자문기록부 비치</u>) 의장은 제2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u>대하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자문기록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u>	-----. 제8조(수당) ① <u>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u> ----- -----. ② -----. <u>다만</u>----- <u>공휴일이면</u> -----. 제9조(<u>자문 기록부 비치</u>) ----- ----- <u>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입법·재정·법률 자문 기록부</u>-----.
--	---

제7조(「담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u>국외출장</u>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u>상시출장을 요하는</u>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제1조(목적) ----- ----- <u>국외 출장</u>----- -----.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u>상시 출장을 필요한</u> ----- ----- <u>대해</u>

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않는다. 이 경우 출장 일수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 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출장을 할 경우 국내여비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서----- 상시 출장 여비(이하 “월액 여비” -----
-----.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 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는 월액 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 일수가 월 15일 미만일 때는 월액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③ 월액 여비의 지급 대상, 월지급 한도액 등과 기타 -----
--- 관해서-----
-.

제3조(여비 지급구분) -----
---- 국내 출장을 할 경우 국내여비는 -----
-----.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6조(준용) 공무원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
----- 국내 여행-----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
----- 환수하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

② -----
-----.

1. ---- 출장 신청 -----
----- 받는 -----
--

2. ----- 출장 여부-----

<삭 제>

제6조(준용) 공무원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

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의2제5항을 준용하지 않는다.
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중 “소속장관”은 각각 “담양군의회 의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
4. 제18조제1항 단서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담양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
-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담양군의회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원 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담양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로 “「공무원 차량 관리 규정」 별표 1”은 “「담양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않는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

않는다.

7.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8.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담양군의회 토론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의 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u>관리·운영</u>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관</u> <u>리 및 운영</u>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u>현안사항</u> “이란 담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담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사항 등을 말한다.	1. “ <u>현안 사항</u> “이란 담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담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사항 등을 말한다.
2. “ <u>토론회 등</u> ”이란 제1호의 <u>현안사항</u> 에 대한 군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u>토론회</u> , 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 각종 <u>의견청취 행위</u> 를 말하며 「담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2. “ <u>토론회등</u> ” ----- <u>현안 사항</u> 에 대한 군민 <u>의견</u> ----- ----- <u>토론회</u> , <u>간담회</u> , ----- <u>의견 청취 행위</u> 를 말하며 「담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56조-----.
제3조(<u>운영원칙</u>)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u>토론회 등</u> 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u>군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u> 해야 한다.	제3조(<u>운영 원칙</u>) ① ----- ----- <u>토론회등</u> ----- ----- <u>군민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u> 하여야 --.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
렴된 군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
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
력해야 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
가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
으로 현안 사항에 대한 해결방
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
론회 등을 운영해야 한다.

제4조(신청 및 승인) ① 위원회
또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
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
지 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승인
신청서를 개최일부터 15일 전까
지 제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개최승인신
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
내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
보해야 하며, 불승인하는 경우
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해야 한
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제출 및

② ---- 토론회등-----
- 군민 의견-----
----- 노력하여야
--.

③ ----- 토론회등의 참가자가
상호 간 -----
----- 해결 방안--

----- 토론회등을 운
영하여야 --.

제4조(신청 및 승인) ① -----

토론회등을 -----
----- 토론회등
개최 승인 신청서-----
----- 제출하여야 --.

② ----- 토론회등 개최
승인 신청서----- 3일 -----
-----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할 때는 -----
---- 첨부하여야 ---.

③ ----- 토론회등 -
----- 때는 -----
----- 참가 방법

참가방법 등을 개최일로부터 7
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
고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
구하고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토론회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관리) ① 토론회 등에 대한
연간계획 수립과 예산편성 및
지원 등은 의회사무과에서 관리
한다.

② 세부적인 지원은 업무와 관
련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한
다. 단, 해당 상임위원회에 속
하지 않는 업무는 의회운영위원
회에서 지원한다.

③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
성 · 관리해야 한다.

1. · 2. (생략)

3. 토론사항 및 진행사항

4. · 5. (생략)

제6조(진행) ① 토론회 등에서 사
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해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

----- 공고하여야 --.

④ -----

----- 토론회등-----
-----.

제5조(관리) ① 토론회등에 대한
연간 계획 -----
-----.

② -----
----- . 단
만-----
-----.

③ -----
----- 작성 및 관
리하여야 -----
-----.

1. · 2. (현행과 같음)

3. 토론 사항 및 진행 사항

4. · 5. (현행과 같음)

제6조(진행) ① 토론회등에서 사
회자는 토론회등을 공정하게 진
행하여야 하며, 토론회등-----

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
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
다.

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
로 한다. 다만, 의장은 질서유
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비공
개로 할 수 있다.

제7조(결과의 반영 등) ①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
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
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
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
해야 한다.

② 해당 상임위원회는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5조 제
3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해당 상임위원회는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
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

-----.

② 토론회등-----
---. -----

--- 대해서-----
-.

제7조(결과의 반영 등) ① -----
----- 토론회등-----

----- 인정할 때는 -----

----- 반영하여야 -----
-----.

② ----- 토론회등-----
----- 제5조제3항-----

----- 보고하여야 -
-.

제8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요청)
----- 토론회등-----
----- 때는
관계 기관 -----

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
제9조(실비보상) ① 토론회 등의 발표자, 토론자, <u>자료제출자</u> ,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실비 보상) 토론회등----- ----- <u>자료 제출자</u> ----- ----- ----- -----.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제9조(「담양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u>같은 법 시행령 제37조</u> 에 따라 담양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u>지방자치법 시행령</u> 」 제37조-----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직무“란 담양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u>회기</u>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	제2조(정의) ----- -----. 1. ----- ----- <u>회기</u> <u>중</u> -----

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담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한 공무출장을 말한다.

2. “회의수당”이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 “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에 준한다.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의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

-----.

2. “회의 수당”이란 -----

-----.

3. ----- 의원의 사망 당시

-----.

제3조(보상금 지급 대상) ① ----
--- 지급 대상-----
-.

1. ~ 4. (현행과 같음)

② -----
----- 인정 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를 준용한다.

제4조(보상금 지급 기준) ① ----
--- 지급 금액-----
-.

1. · 2. (현행과 같음)

3. -----

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② (생 략)

제5조(장해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해 “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규정된 “장해등급 “ 1급부터 제14급까지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보상금의 청구등) ① · ② (생 략)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의거 군수가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

-----.
----- 지급 금액-----
-----.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장해와 상해의 기준) ① --

----- 제1급-----
-----.

② -----

----- 치료가 필
요한 -----.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7조(보상금의 지급 결정) -----
----- 심의 결과-----
-----.

제8조(보상금의 지급 방법) ① --
----- 일시금으-----
-----.

② -----

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의원상해 등 보상 심의회
구성) ① (생략)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원 중 1명

2. ~ 4. (생략)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
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
사

3. · 4. (생략)

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
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
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
산하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때는 -----
-----.

제9조(의원 상해 등 보상 심의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담양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2. ~ 4. (현행과 같음)

<삭제>

제10조(심의회 기능) -----
-----.

1. ----- 따른 보상금
지급 대상 --

2. ----- 경위 조
사

3. · 4. (현행과 같음)

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

----- 소속
공무원-----

또는 전보된 때, 의원의 임기가 <u>만료된 때에는</u> 그러하지 아니한다.	----- <u>만료되었을 때</u> -----.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생략)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u>때</u> 는 위원중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u>때는</u> ----- -----.
제14조(심의회 의 간사) ① (생략) ② 간사는 군 <u>소속공무원</u>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14조(심의회 의 간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u>소속 공무원</u> ----- -----.
제15조(심의회 의 수당)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u>대하여</u> 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담양군 <u>소속 공무원</u> 이 위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5조(심의회 의 수당) ----- ----- <u>대해서</u> ----- ----- -. ----- <u>소속 공무원</u> ----- -----.

제10조(「담양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담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 -----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홍보·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이상이 연대 서명해야 한다.

② (생략)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하여야 --.

② -----

----- 구축·운영하여야 --.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

-----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
-----.

② (현행과 같음)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 의회 의장
(이하 “의장”이라 한다)-----

-----.

② 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4. (생략)

③·④ (생략)

제5조의2(대표자 등의 서명요청 등) ① 대표자 및 수임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요청 시 조례안과 본인의 대표자증명서나 수임자증명서를 제시하고 청구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②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사람은 청구권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성명과 주소, 생년월일을 적고 본인의 성명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한다.

③ 대표자는 청구인명부를 읍면별로 구분하여 권별로 묶고 각 권에 별지 제4호서식의 표지를 부착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

② 의장-----

-.

1. ~ 4.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5조의2(대표자 등의 서명요청 등) ① -----

----- 주요 내용을
설명하여야 -----
-----.

② -----

----- 날인하여야 --.

③ -----

----- 제출
하여야 --.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

에 따라 공표 및 열람하게 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 3. (생 략)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생 략)

②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
라 담양군청과 의회 및 읍·면
사무소에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
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10조(이의신청) 법 제11조제2
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
지 제8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
간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
다.

제11조(보정기간) ① 법 제11조제
4항에 따라 보정이 필요한 경우
의장은 대표자에게 청구인명부
를 보정할 것을 서면·구두 및
전화 등 기타 상당한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

포함하여야 --.

1. ~ 3. (현행과 같음)

4. ----- 열람 기간 ---
--

5. (현행과 같음)

② -----

----- 하여야 -
-.

제10조(이의신청) -----

----- 열람 기간 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

제11조(보정기간) ① -----

----- 통지하여야 --.

② -----

인명부의 보정기간은 표자가 제 1항에 따른 보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중전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3. 12.22.>

제11조의2(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 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의 심사·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민조례청구에 대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리·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구두 및 전화 등 기타 상당한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미리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줘야 한다.

③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 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명백하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제2항에 따

----- 날부터 10
일 -----.

제11조의2(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 ① -----
--- 열람 기간-----

----- 통지하
여야 --.

② -----

----- 주어야 ---
-----.

③ -----

미달하면, -----

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

-----.